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61

발의연월일: 2021. 12. 29.

발 의 자: 주호영・권명호・金炳旭

전봉민 · 박 진 · 이채익

한무경 · 김성원 · 배현진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반면,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학교 수가 2005년 17개에서 2017년 현재 75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학교 중 일부 학교는 연간 학비가 1,000만원 이상에이르고 있어 각종학교 역시 학교 경비 운용 등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각종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 임(안 제31조제1항).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 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	①
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	
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
하여야 한다.	<u>교를 제외한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